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315
----------	-------

발의연월일 : 2026. 1. 26.

발 의 자 : 최형두 · 이준석 · 김예지
우재준 · 김성원 · 정성국
김기웅 · 박충권 · 김승수
강승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12월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개정 전 불법촬영물등에 한정되었던 투명성 보고서 작성 대상 정보를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에까지 확대하였음.

그러나 투명성 보고서의 작성 대상 정보를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에까지 확대할 경우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업무량이 가중되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과도한 규제 부담이 될 우려가 있음.

이에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보고서 공표의무를 삭제하고 불법촬영물등에 한정하여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4 삭제 및 제64조의5 신설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14를 삭제한다.

제6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5(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매년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를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이하 “투명성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다
음해 1월 31일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기
울인 일반적인 노력에 관한 사항
2.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신
고, 삭제요청 등의 횟수, 내용, 처리기준, 검토결과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3.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
·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절차의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

항

4.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배치에 관한 사항

5.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내부 교육의 실시와 지원에 관한
사항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투명성 보고서를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투명성 보고서의 사실을 확인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6조제3항제4호의4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제64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u>제44조의14(보고서의 공표 등) ①</u> <u>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6개월에 1회 이상 다음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접근성이 보장된 방식으로 공표하여야 한다.</u> <u>1.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u> <u>2. 신고된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제44조의7의 유형에 따른 분류와 각 신고 건수 및 이에 따라 처리한 건수, 조치</u> <u>3. 제44조의12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과 이의신청 처리의 건수 및 결과</u> <u>4.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에 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받</u>	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u><삭 제></u>

은 명령이나 권고의 내용과
수, 명령이나 권고에 따른 조
치

5. 그 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
스 제공자의 약관, 정책 또는
제44조의4제2항에 따른 자율
규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처리
한 정보의 유형, 건수, 조치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
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매년 자신이 제공하는 정
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유통되
는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
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
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
하여 기울인 일반적인 노력에
관한 사항

2.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 등의 신고, 삭제요청 등의 횟수, 내용, 처리기준, 검토결과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3.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절차의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배치에 관한 사항

5.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내부 교육의 실시와 지원에 관한 사항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서의 사실을 확인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제64조의5(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매년 자신이 제

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이하 “투명성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기울인 일반적인 노력에 관한 사항
2.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신고, 삭제요청 등의 횟수, 내용, 처리기준, 검토결과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3.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절차의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배치에 관한 사항
5.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내부 교육의 실시와 지원

제76조(과태료)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의3. (생략) 4의4. 제44조의14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의5. ~ 24. (생략) <신설> ④ (생략)	<u>에 관한 사항</u>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투명성 보고서를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투명성 보고서의 사실을 확인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6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4의3. (현행과 같음) <삭제> 4의5. ~ 24. (현행과 같음) 25. 제64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④ (현행과 같음)
---	---